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정원석 연구위원

국회와 정부는 당초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월납 모두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함. 하지만,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유인감소 등에 대한 고려가 간과된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됨.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일시납 보험 비과세 한도는 1억 원, 월납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됨. 보험회사와 정부는 이번 소득세제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회와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금융 및 보험소득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¹⁾을 개정하였음.

-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 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과세기반 강화 기초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율 최고 세율의 경우 5억 원 초과 40% 세율 구간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강화되었음.
- 특히 보험과 관련해서는 서민 자산형성과 노후자금 마련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조정되었음.²⁾
 -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됨.
 -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던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보험은 월 15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신설됨.

1) 본고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없는 한 소득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소득세법으로 통칭함.

2) 기획재정부(2016. 12. 28),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당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즉시납과 월적립식 보험 모두 한도 1억 원으로 논의되었음.

- 정치권 일부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보고 보수적인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주장함.
 - 이는 비과세 항목을 줄여나가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하여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의 대폭 축소가 추진되었음.

■ 하지만 이는 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장기저축성보험과 연계된 보험회사 연금보험의 적립액 비중은 전체 개인연금³⁾의 63.8%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노후소득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⁴⁾
- 또한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중 절반이 저축성보험료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보험회사 및 설계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⁵⁾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 발표는 정부의 비과세 축소 원칙과 국민의 노후소득원 마련 및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고려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일시납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감소와 월납식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신설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방향이 반영된 것임.
 - 비과세 한도 축소 및 설정은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유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월납식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 원으로 당초 안보다 다소 높게 정한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월 150만 원을 10년간 납입할 경우 총납입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세제혜택 한도 1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

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5) 정원석(2016. 12. 19),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KiRi 리포트』, 특별호, 보험연구원.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저축성보험의 수익률 제고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임.

kiri